

## 제 14 장 분쟁해결

### 제 14.1 조 협 력

양 당사국은 언제나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협의함으로써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도록 모든 시도를 한다.

### 제 14.2 조 적용범위

1.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다른 곳에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의 이행·해석 또는 적용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적용되고 또한 당사국이 다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 의무와 불일치하는 경우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그리고 제6장(서비스무역)상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될 경우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및 그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기한 및 절차규칙은 이 장이 규율하는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

3. 중재패널의 사실인정, 결정 및 권고로 이루어진 중재 판정은 이 협정상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4. 이 장은 이 협정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원용될 수 있다.

가. 당사국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또는 그 밖의 당국, 그리고

나. 당사국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또는 그 밖의 당국으로부터 위  
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

중재패널이 이 협정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5. 양 당사국과 이 장에 따라 임명된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국제공법 해석의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 제 14.3 조

####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동 협정에 따라 교섭되거나 이를 승계한 협정 모두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

2. 분쟁해결절차가 제14.6조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조에 따라 개시되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 제 14.4 조

#### 협 의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 14.2조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고,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3.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모든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 가. 그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 나. 협의와 협의에서 교환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 **제 14.5 조**

#### **주선·조정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주선·조정 또는 중개에 합의할 수 있다. 주선·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이 장에 따른 후속 절차 또는 양 당사국이 선택한 분쟁해결절차상의 그 밖의 절차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14.6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에서 분쟁 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조정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 **제 14.6 조**

#### **중재패널 요청**

1. 협의 요청 접수일 이후 45일 이내에 제14.4조에 따라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서면으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재를 요청할 경우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명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적시를 포함한 제소의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요청서의 전달이후

설치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 14.7 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제14.6조에 규정된 중재패널은 통상적으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국은 제14.6조에 따른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1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양 당사국은 두 번째 위원 임명 이후 30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세 번째 위원을 공동으로 임명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기간 내에 자국의 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임명한 위원이 유일한 중재자로서 활동한다.

2.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의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이후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4명의 지명자로 구성된 각자의 명단을 교환한다. 의장은 두 번째 위원의 임명일부터 4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그 명단에서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4명의 지명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명단에서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다.

3.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패널의 위원이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승계인은 원 위원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승계인은 원 위원의 모든 권한 및 임무를 가진다. 그러한 경우, 중재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원 패널 위원이 활동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유일한 중재위원 또는 의장이 교체되는 경우, 이전에 진행된 심리는 반복된다. 중재 패널의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 그러한 심리는 중재 패널의 재량으로 반복될 수 있다.

5. 중재패널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법률, 국제무역,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위원은 공평성·객관성·신뢰성·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임되며, 중재절차 전 과정에서 동일한 기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위원이 위에 명시된 기

초를 위반한다고 믿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위원은 이 조에 따라 신임위원으로 교체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장은 일상 거주지를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 두지 못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고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 14.8 조 절차의 종료

양 당사국은 언제든지 공동으로 의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중재패널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제14.11조에 따른 최초 보고서의 제출 이전에 제소 당사국이 제소를 취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 제 14.9 조 중재패널 절차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다음을 보장하는 부속서 14-가의 모범절차규칙을 따른다.

- 가. 분쟁해결절차, 패널에 대한 서면제출 및 패널과의 교신에 대한 비밀 유지
- 나. 중재패널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
- 다. 중재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라.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 마. 사호를 조건으로 당사국이 자국의 서면제출서를 언제든지 대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할 것
- 바. 각 당사국이 제14.1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최초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그리고
- 사. 비밀정보의 보호

2.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한 후에 이 장과 부속서 14-가 모범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 14.10 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1. 중재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나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된 정보 또는 기술적 조언은 양 당사국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2. 중재패널은 당사국이 제기한 과학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사안에 관한 사실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된 자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패널을 지원은 하지만 중재패널이 내린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도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전문가를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 14.11 조**  
**최초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조항, 양 당사국의 의견·주장 및 제14.10조에 따라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마지막 위원이 임명된 후 9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그 이유와 함께 사실 및/또는 법적 조사결과

나. 이 협정의 이행·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결정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 되는지 여부, 이 협정상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되는지 여부, 또는 위임사항에서 요청된 그 밖의 결정, 그리고

다. 만약에 있다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

3. 양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서면의견이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접수된 경우, 중재패널은 자발적으로 또는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최초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이러한 서면의견을 고려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

#### **제 14.12 조**

##### **최종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전달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된다.

#### **제 14.13 조**

#####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중재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중재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한다.

가.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분쟁해결 수단,  
그리고

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양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의 특별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그 요청 이후 1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3. 최종 보고서에서 중재패널이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 부여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분쟁해결 수단은,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 무효화 또

는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 14.14 조**  
**불이행 - 보상과 혜택 정지**

1. 양 당사국이,

가.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제14.13조제2항가호에 따른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나. 제14.13조에 따라 분쟁해결수단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제14.13조제2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그 수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보상 조정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보상 조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피소 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소 당사국은 이 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중재패널이 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혜택을 정지할 경우 그 혜택은 이 협정상 피소 당사국에 부여된 것으로 한정된다.

4. 제2항에 따라 정지 대상이 되는 혜택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우선 중재패널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사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 분야의 혜택 정지를 시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및/또는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의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분야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5.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 협정에 불합치하거나 이 협정상 부여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이 도출되는 시기까지만 적용된다.

6.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거나,

나. 중재패널이 판정한 불합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에게 이 사안을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원 중재패널은 재소집된 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게 판정을 제시한다.

7.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권고를 따르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은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에의 회부를 포함하여 이 장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중재패널은 이 분쟁이 회부된 이후 6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8. 중재패널이 원 위원들로 재소집될 수 없는 경우, 제14.7조에 규정된 중재패널 임명 절차가 적용된다.

#### 제 14.15 조

##### 공식 언어

1. 모든 절차 및 중재패널에게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한다.

2.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원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당사국은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 제 14.16 조

##### 경 비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비용 및 그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에게 균분된다.

2. 각 당사국은 중재절차에서 소요된 자국의 경비 및 법률 비용을 부담한다.